



유의사항

□ 예비검사대상: 선체·기관·배수 등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별표 3의 어선용품

□ 그 밖의 유의사항

-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의 제조·개조·수리·정비를 시작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.
-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·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.
-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어선검사를 최초로 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.

처리절차

